

## 대학자체평가규정

2009.12.01.제정	2011.04.18.일부개정	2012.08.01.일부개정	2014.03.28.일부개정
2017.03.01.일부개정	2018.03.06.일부개정	2018.07.01.일부개정	2019.04.30.일부개정
2019.10.01.일부개정	2020.03.01.일부개정	2020.10.01.일부개정	2021.06.01.일부개정
<u>2023.09.01.일부개정</u>			

### <미래전략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1항,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및 「학칙」 제72조에 따라 동명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대학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6.)

**제2조(적용)** 대학자체평가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대학자체평가의 정의)** 본 대학교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정하고, 차년도 경영방침 및 대학발전계획 수립·개선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3.6.)

**제3조의2(평가대상 및 평가영역)** ① 자체평가의 대상은 본 대학교의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한다.  
 ② 자체평가의 영역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의 공시정보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대학발전계획 및 경영
2. 교육 및 연구
3. 조직 및 운영
4. 시설 및 설비
5.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3.6.]

**제4조(대학자체평가기획위원회 등)** 본 대학교는 대학자체평가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자체평가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와 대학자체평가연구위원회(이하 “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획위원회의 구성 등)** ① 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교무처장, 학생처장, **입학홍보처장**,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대학혁신실장**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4.18., 2012.8.1., 2018.7.1., 2019.4.30., 2019.10.1., 2020.03.01., 2021.6.1., 2023.09.01.)

- ③ 위원은 보직임용에 따라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9.4.30.)
-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기획위원회의 기능)** 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3.6.)

1. 대학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학자체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대학자체평가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대학자체평가 결과 심의
5. 대학자체평가 결과의 발전계획 환류와 경영 연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연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연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3.6., **2023.09.01.**)

- ② **위원장은 RISE전략팀장으로 하며,** 평가영역별 전문성 있는 교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4.18, 2012.8.1., 2014.3.28., 2017.03.01., 2018.3.6.,2018.7.1., 2019.4.30., 2019.10.1., 2020.03.01., 2020.10.1., 2021.6.1., **2023.09.01.**)
- ③ 위원은 매년도 자체평가 시 마다 위촉한다. (개정 2018.3.6.)

**제8조(연구위원회의 기능)** 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8.3.6.)

1. 대학자체평가 지표개발, 개선 및 조정
2. 대학자체평가 실시
3. 대학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4. 그 밖에 대학자체평가연구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대학자체평가 시기)** 대학자체평가는 매 학년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3.6.)

**제10조(대학자체평가의 절차) ①** 각 부서장은 대학자체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대학 자체평가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6.)

- ② 대학자체평가 담당부서는 제출된 평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하여 연구위원회에 제출하고, 연구위원회는 자체평가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8.3.6.)
- ③ 대학자체평가 담당부서는 작성된 대학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기획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한 후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부서별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가 있을 경우 기획위원회 재심을 거쳐 최종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8.3.6.)
- ④ 대학자체평가 담당부서는 자체평가 최종 결과를 대학 알리미 및 대학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각 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18.3.6.)

**제11조 삭제** <2018.3.6.>

**제12조(평가결과의 활용 및 환류)** ① 총장은 대학자체평가 결과 우수 부서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 지원 재정을 함으로써 경영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3.6.)

② 총장은 대학자체평가 결과를 차년도 경영방침, 대학발전계획의 수립·개선, 대학특성화 정책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환류하여야 한다. (신설 2018.3.6.)

**제13조(시행지침)**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대학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2항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